

본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당사(이하 “회사”라 함)가 정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등 관계 법규(시행령, 시행세칙, 금융위원회 규정,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 지침 등을 포함)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의거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처리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준법감시인 임형국 상무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Compliance팀 윤현구 차장  
 전화번호 : 02-3770-3678 /  Fax : 02-3770-2640 /  E-mail : hyunkoo.yoon@tongyang.co.kr

## 개인정보 처리방침

###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제1-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 사은 행사 및 판촉행사, 상품 및 서비스 이용 안내, 시장조사,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연구 등을 위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1항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등을 위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3자(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제휴 카드사, 제휴 보험사, 제휴 대출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사은품 및 판촉물의 지급, 상품 및 서비스 소개, 회원유치, 서비스이용권 유 등을 위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3항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제3자(제휴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회사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인정보 처리목적과 달리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서 허용하는 처리목적 및 처리절차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2-1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회사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국적, 직업, 연락처, E-mail 등)
  2. 금융거래정보(예탁금, 투자 또는 신탁 자산, 거래내역 등)
  3. 신용거래정보(개설정보,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신용거래내용 등)
  4. 투자자정보(투자권유준칙 등에 따른 투자자정보 및 투자성향 등)
  5. 민감정보(상이 유공자 및 장애인 등) 단, 생계형 저축상품 등의 가입에 한함.
- ② 회사가 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 사은 행사 및 판촉행사, 상품 및 서비스 이용 안내, 시장조사,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연구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선택적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국적, 연락처, E-mail 등)
  2. 금융거래정보(예탁금, 투자 또는 신탁 자산, 거래내역 등)
  3. 투자자정보(투자권유준칙 등에 따른 투자자정보 및 투자성향 등)
  4. 기타(결혼여부, 기념일, 취미, 소득수준, 가족정보 등)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 항목은 회사가 정보주체로부터 제출받는 동의서의 개인정보 항목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다.
- ④ 회사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달리하여 개인정보의 항목을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서 허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처리절차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1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회사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수집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회사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 사은 행사 및 판촉행사, 상품 및 서비스 이용 안내, 시장조사,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연구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선택적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단, 동의철회일 후에는 이용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금융)거래관계의 등을 위하여 제3자(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제휴 카드사, 제휴 보험사, 제휴 대출회사)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제공받은 자(제3자)는 제공받은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사은품 및 판촉물의 지급, 상품 및 서비스 소개, 회원유치, 서비스이용권유 등을 위하여 **제3자** (제휴업체)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제공받은 자(제3자)는 개인정보가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하여야 한다.
- ⑤ 회사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과 달리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서 허용하는 처리 및 보유기간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4-1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회사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회사가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알릴 수 있다.

**제4-2조(개인정보의 제공 제한)** ① 회사는 개인정보를 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④ 회사가 법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회사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⑥ 회사가 제3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인

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알릴 수 있다.

- ⑦ 회사가 제 2 항제 4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5-1조(수탁자의 선정시 고려사항)** ① 회사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2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회사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4.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7.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8. 법 제 26 조제 2 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 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회사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관계 법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

## **6.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제6-1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6-2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회사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정보주체는 제 1 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 3 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열람 요구사항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⑤ 회사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⑥ 회사는 제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4항에 따라 열람 요구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일부 열람의 경우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 포함)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6-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 또는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이외

의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회사는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 및 이유(근거법령의 내용 등)와 이의제기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하며, 그 조치를 한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제7-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제7-2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 전자적 파일형태인 경우 : 사회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2. 제1호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제8-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대표이사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공개)** ①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제9-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2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10-1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2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3조(접근권한의 관리)** ①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4조(비밀번호 관리)** 회사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10-5조(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 ② 회사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만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의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제10-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⑤ 회사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위험도 분석(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단과 유출시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과 그 위험을 분석하는 행위) 결과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저장시 암호화를 적용하는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암호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위험도 분석과 관계없이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저장 현황분석
  - 2. 개인정보의 저장에 따른 위험도 분석절차(또는 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 3. 개인정보의 저장에 따른 암호화 방법
  - 4. 암호화 추진 일정 등
- ⑧ 회사는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저장하여야 한다.

**제10-7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방지)** ① 회사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0-8조(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
- 2.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제10-9조(물리적 접근 방지)**

① 회사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0-10조(전산센터, 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회사가 전산센터(IDC : Internet Data Center), 클라우드컴퓨팅센터(Cloud Computing Center) 등에 계약을 통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임차 또는 임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서(SLA : Service Level Agreement)에 이 방침에 준하는 수준의 안전조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